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371
----------	-----

제안년월일 : 1994년 9 월 일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안이유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충실적으로 관리운영 하기로 하

□ 주요골자

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은 충청북도 출연금, 기관단체와 독지가 기탁성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함 (안 제4조)

다.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원장을 부지사, 부위원장을 도기획관리실장, 위원은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장,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시·군지부장 3인, 도 가정복지국장,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등 10인이내로 한다.
(안 제5조)

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함(안 제8조)

마. 운용기금의 사용은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총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건강사업 및 취미활동 지원, 충청북도노인회보 발간,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안 제 12조)

바. 적립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출납원으로 노인복지계장을 둔다.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연합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담당은 연합회사무국장으로 함 (안 제 13조)

나. 적립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
연합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해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후 도지사·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참고 사항 (관련법규 : 별첨)

○ 노인복지법 제 4 조

○ 지방자치법 제 133조

○ 지방재정법 제 29조, 제 110조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정의) 노인복지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관단체, 독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또는 성금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도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장 (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시·군지부장 3인, 충청북도가정복지국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 노인복지계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기본운영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3. 12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구분관리) ① 적립기금은 충청북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의 노인복지기금으로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예치 운영한다.

② 적립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적립기금의 관리는 기금운영관이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연합회에서 관리한다.

④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계획) ① 기금관리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적립·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기금관리계획서를 충청북도의회 (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용기금의 사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2.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4. 충청북도노인회보 발간
5.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한 후 사용한다.

제13조 (회계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한다.

②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연합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담당을 연합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① 적립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